

폐기물관리 안내서



<http://www.seo.incheon.kr>

자원순환과

목 차

□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집	-----	p.1
I. 폐기물 배출자	-----	p.2
II.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p.11
III. 폐기물 처리업체	-----	p.13
IV.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p.24
□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	p.28
□ 행정처분 기준	-----	p.32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집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함.

I

폐기물 배출자

1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준수사항

- ▶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며,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2항
- 조치사항 : 고발(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허가취소
- 위반사례
 - 00는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경기도 00시 00사업장등에서 수집·운반하여 온 사업장폐기물 약 1,000톤가량을 00시 00동 00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 및 적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임.

2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준수사항

-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변경신고 미필(사업장일반폐기물)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행정처분 : 과태료(3백만원이하)

○ 위반사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신고한 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할 경우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 00는 관할구청에 폐수처리시설 가동시 월 평균 5톤의 폐수처리오니가 발생함을 신고 득하였으나 점검 결과 월평균(최근 6개월) 배출양이 15톤으로 신고한 양보다 200% 증가하였으나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임

■ 신고·확인 대상 폐기물 발생 사업장

구 분	관련법규	신고서식	작성대상 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별지 제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오니(월평균500kg 이상) ②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평균 50kg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이상) ③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레카 또는 폐석면(각각 월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이상) ④ PCBs함유 폐기물 ⑤ 폐유독물 ⑥ 의료폐기물 ⑦ 기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별지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출시설 운영 : 폐기물 100kg/일 이상 배출 ②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폐기물 100kg/일 이상 배출 ③ 폐기물 300kg/일 이상 배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별지 제7호)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 또는 작업으로 5톤이상 배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별지 제8호)	공동처리운영 기구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

● 변경신고 대상 :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규 폐기물 배출	신규 폐기물 배출 (신규 신고 요건과 동일)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50% 이상 증가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30% 이상 증가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 50% 이상 증가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처리방법 동일하고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 제외)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
폐기물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일련의공사 또는 작업 으로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

●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구 분		처리기간	제출·구비서류
사업장 폐기물	최초신고	3일 또는 7일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원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변경신고	3일 또는 7일	사업장폐기물변경배출신고서(원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필증(원본)
지정 폐기물	최초신고	5일	폐기물처리계획서(원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또는 수탁확인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변경신고	5일	폐기물처리계획서(원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필증(원본)
건설 폐기물	최초신고	3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원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변경신고	3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원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필증(원본)

3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준수사항

- ▶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1】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 보관 부적정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위반사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 OO는 건설기계정비를 하면서 발생한 폐윤활유 및 폐유고상(기름장갑 및 기타 폐기물)을 폐기물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노천상에 방치한 사실임

【위반사례 2】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위반사례
 - △△는 조립금속 기계제조업소로서 당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중 폐유(액, 고상)는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점검 당시 폐유(액,고상) 약 00톤을 보관기한인 45일을 초과(25일 초과 보관)하여 70일간 보관한 사실임
 - ※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 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

【위반사례 3】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 보관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위반사례
 - △△는 특장차 제조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 보관하여야 하나
 - 점검당시 생산공정 중 프레스 등에서 발생된 폐유(폐유압작동유, 폐윤활유통, 폐그리스통)등 약 00톤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보관함

【위반사례 4】

○ 위반내용 :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 부적정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6백만원 이하)

○ 위반사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 00는 폐수처리 후 발생한 오니 000톤을 폐기물보관장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 내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공터에서 야적 보관함

【위반사례 5】

○ 위반내용 :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위반사례

-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00는 2009. △. △.경부터 폐수처리 후 발생한 오니 00톤을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기한인 90일을 초과하여 2009. □. □. 점검일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한 사실임

【위반사례 6】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3백만원 이하)
- 위반사례
 -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일 현재 건설기계장비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윤활유 약 200리터 가량을 보관창고에 보관중임에도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임

4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준수사항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받은 자,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위탁 처리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 행정처분 : 고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OO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코자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방지 시설에서 발생된 폐수처리오니 약 25톤 가량을 2009. 0. 0.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에 위탁 처리한 사실임

II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등

준수사항

- ▶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1】

- 위반내용 : 미승인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영업정지1개월 및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점검 당시 사업장에서 수집·운반하여 온 폐기물을 적정 처리 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인천 서구 00동 000-00번지 상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의 폐기물 20톤 가량을 무단 적치한 사실임.

【위반사례 2】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폐기물수집·운반기준 위반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경고(2차:폐기물처리금지1개월) 및 과태료(7백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폐축전지를 수집·운반코자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폐기물을 수집·운반 시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09. △. △. 00시 소재 카센타에서 발생한 폐축전지와 고철 등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수집·운반한 사실임.

III

폐기물 처리업체

1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준수사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 행정처분 : 과태료(100만원 이하)
- 위반사례
 - OO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폐주물사 등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중간처리하는 곳으로
 -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09. △. △.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부터 폐주물사 25톤을 인수하였으나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사실임.

2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준수사항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폐기물 수출신고 미이행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
- 행정처분 : 고발(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00는 폐PCB기판 등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곳으로
 - 2009. 00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인천 서구 00동 000-0번지에서 폐PCB기판을 수거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수출 신고 없이 중국 등지에 상기 폐기물을 수출한 사실임

3 폐기물 처리업 허가

준수사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 행정처분 : 고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1개월
- 위반사례
 - 00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폐합성수지를 파쇄하는 곳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 당시 처리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이 아닌 폐목재, 폐비닐 등이 혼합된 건설폐기물 약 △△톤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한 사실을 확인함.

4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준수사항

-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신고)를 받아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 행정처분 : 고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00는 목재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2009. 0월경부터 동년 △. △.까지 동사업장에서 발생한 MDF, PB 등의 폐목재를 소각 처리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설치 운영중임을 확인함.

5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준수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1】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미이행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 행정처분 : 고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3개월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초 설치검사 이후 최종정기검사일부터 3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목재와 폐종이 등을 폐기물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위반사례 2】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온도기록지 미보존)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 행정처분 : 영업정지1개월(처리업체에 한함) 및 과태료(1천만원이하)
- 위반사례
 - 00는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의거 자동 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당시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임의 폐기한 사실을 확인함

【위반사례 3】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자동온도기록계 고장 방치)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 행정처분 : 영업정지1개월(처리업체에 한함) 및 과태료(1천만원이하)
- 위반사례
 - 00는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붙여진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계측장비는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 당시 자동온도기록계가 노후 되어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사실임

6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준수사항

- ▶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1】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미이행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100만원 이하)

○ 위반사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는 폐기물의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 00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수에 대해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조업 중으로 2009. △. △.부터 2009. △. △. 점검당일까지 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함

【위반사례 2】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미이행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 행정처분 : 경고(2차:영업정지1개월) 및 과태료(100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09. △. △△.경부터 동년 △. △△.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대장을 기록치 아니한 사실임.

7 폐기물 재활용 신고

준수사항

▶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신고자 변경신고 미필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3항

○ 행정처분 : 과태료(3백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폐기물처리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당초 신고한 인천 서구 △△동 00-00번지에서 인천 서구 □□동 000-00번지로 재활용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임.

※ 변경신고 사항

–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공사현장 소재지 포함)

– 재활용사업장 소재지, 상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 재활용시설의 용량,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

8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준수사항

준수사항

- ▶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17의2)을 지켜야 한다.

【위반사례 1】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준수사항 위반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
- 행정처분 : 경고(2차:처리금지1개월)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사업자는 폐기물을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점검당시 반입 받은 페플라스틱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 외부 장소인 인천 서구 00동 00-00번지상에 야적한 사실임.

【위반사례 2】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준수사항 위반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
- 행정처분 : 경고(2차:폐기물처리금지1개월) 및 과태료(1백만원 이하)
- 위반사례
 - OO는 관할 구청에 폐목재를 재활용코자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곳으로
 -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주의사항 등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계약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일 현재 폐기물 위탁재활용계약서 상에 폐기물재활용방법, 취급시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임.

IV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사항

▶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1】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 관련 법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제13조의2

○ 행정처분 : 영업정지1개월,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2009. △. △.부터 동년 동월 △일까지 관할 구청에 임시보관 장소 승인 없이 인천 서구 00동 00-00번지 상에 건설폐기물 약 100톤 가량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위반사례 2】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미설치
- 관련 법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경고(2차:영업정지1개월),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 3】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 관련 법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경고(2차:영업정지1개월),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 당시 동사업장의 허가부지가 아닌 00동 00-0번지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200톤 가량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위반사례 4】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 관련 법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경고(2차:영업정지1개월), 과태료 7백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일 현재 차량 운행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회사명과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사실임.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준수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위반
- 관련 법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 행정처분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위반사례
 - OO는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건설폐기물 배출자 △△와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폐기물의 종류 및 용역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임.

폐기물 배출업소·처리업체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폐기물배출사업장

주요 체크 사항	점검결과
1. 신고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상호, 소재지, 배출량(일반 50%, 지정 30% 증가), 처리방법, 새로운 폐기물 등 변경사항 발생	
○ 운반자·처리자 변경(지정폐기물의 경우)	
2.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 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 - 지붕·벽면·방지턱, 바닥 포장 및 파손 여부 확인 - 보관폐기물의 외부 누출 및 주변 환경오염 사전 예방 조치 실시 여부	
○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 보관하는지 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사업장일반폐기물 90일 - 지정폐기물(폐유·폐산 등 45일, 기타 60일, 3톤 미만 1년 내)	
○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 여부	
○ 침출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	
3.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신고 등 이행여부	
4. 각종 서류	
○ 전자인계서 적정 입력 및 사용	
○ 폐기물장부 작성(전자인계서 작성시 해당 장부 면제)	

※ 매주 1회 이상 환경기술인이 점검·확인

폐기물처리업체·재활용신고

주요 체크 사항	점검결과
1.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 처리(수집·운반)방법	
- 처리(수집·운반)대상 폐기물	
- 소재지·사업장명 등	
○ 허가조건의 준수여부	
2.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초과보관 확인)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적정여부 - 이행보증금액, 이행방법, 이행기간	
3. 폐기물인계서 등에 관한 사항	
○ 인계서 적정 발급 여부	
4. 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사항	
○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여부	
○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 위탁 여부	
○ 처리 및 재활용(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	
○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여부 -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	

주요 체크 사항	점검결과
5.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 정기검사 실시 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6.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 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 - 지붕·벽면·방지턱, 바닥 포장 및 파손 여부 확인 - 보관폐기물의 외부 누출 및 주변 환경오염 사전 예방 조치 실시 여부	
○ 폐기물 종류별 구획보관 여부	
○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등 방지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허용보관량 초과보관 여부	
○ 침출수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 - 외부 유출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7.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 운반방법, 용기, 운반차량 등을 확인	
○ 운반차량의 적정성 여부 - 차량증 발급 여부, 바닥의 밀폐, 덮개비치, 처리업소명 기재여부 등	
○ 차량운행일지 확인	
○ 폐기물인계서 확인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준수 여부(3년 주기)	
○ 각종 대장 적정작성 및 보관여부	
○ 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매주 1회 이상 환경기술인이 점검·확인

행정 처분 기준

폐기물관리법

[별표 8] <개정 2016. 7.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5	5	5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	20	20	20	

린 경우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200	300	500

경우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흘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4) 삭제 <2014.12.31.>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료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	500	700	1,000

분한 경우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라. 법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		50	70	100

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아.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차.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300	300	300
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2	100	200	300
타.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300	600	1,000
파.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하.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3	100	200	300
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너.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4			
1)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5)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300	500	700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더. 삭제 <2016. 7. 19.>				
러.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5	500	700	1,000
머.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3	50	70	100
버.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서.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어. 법 제25조제9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			

1)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저.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			
1)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나)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0	700	1,000
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700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다)		500	700	1,000

5) 삭제 <2016.1.19.>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처.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	200	400	600
커.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준수사 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3			
1) 등록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 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00	700	1,000
2)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 한 경우		500	700	1,000
3)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300	500	7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피.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 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 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 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허.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노.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도.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경우 4)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300	300	300
		100	200	300
		100	200	300
		100	200	300
로.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모.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3	100	200	300
오.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4	100	200	300
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68조	50	70	100

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3항제10호			
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1호	100	100	100
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포.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호.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구.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누.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두.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루.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별표 21] <개정 2016. 7. 21.>

행정처분기준 (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3호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시설·장비의 기준 일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기술인력 기준의 2분의 1 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기술요원 기준의 2분의 1 미만을 갖추지		경고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 제13조의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4호	경고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의5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의5제1항제3호	지정취소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17조의5제2항제1호	지정취소			
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부족한 경우					
4)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 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의5 제1항 제2호	지정취소			
6)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의5제2항제3호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p>마)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p> <p>바)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p> <p>사)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업무정지 1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지정취소</p> <p>지정취소</p> <p>업무정지 6개월</p>
<p>7)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별표 5의8의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p>	<p>법 제17조의5제2항제4호</p>	<p>경고</p> <p>경고</p>	<p>업무정지 1개월</p> <p>업무정지 1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8)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p>	<p>법 제17조의5제2항제5호</p>	<p>업무정지 6개월</p>	<p>지정취소</p>		
<p>9)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p>	<p>법 제17조의5제2항제6호</p>	<p>경고</p>	<p>업무정지 1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4 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허가취소			
3)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	법 제27조 제2항제1호	허가취소			

는 소각한 경우					
4)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또는 시설폐쇄	
가) 처분 기준 및 방법 중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다)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 재활용 기준 및 방법 중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금지 1개월	해당종류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금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그 밖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5)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6)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4조 제8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	법 제27조 제2항제3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8)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0)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8호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영업정지 6개월</p>	<p>허가 취소</p>		
<p>(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허가 취소</p>
<p>(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경고</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2)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허가취소</p>
<p>13)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27조 제2항제9호</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허가취소</p>	
<p>14)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p>	<p>법 제27조 제2항제10호</p>				
<p>가) 제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p>		<p>영업정지 6개월</p>	<p>허가취소</p>		

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 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5)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6조제6호의 경우에 는 해당 임원을 2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 제1항제2 호	허가취소			
16) 법 제30조제1항·제2 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 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 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1 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31조제1항에 따 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 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 을 운영한 경우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2 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31조제4항에 따 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 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3 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법 제31조제5항에 따 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4 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0)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1)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6호	영업정지 1개월			
22)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7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24)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25)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6)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9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7)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0호	경 고	허가취소		

비고

- 4)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17)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 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가)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나) 그 밖에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 개월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가) 신고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 개월

비고: "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4 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3호	등록취소			
3)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				
가)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4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5호				
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				
가) 등록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의2 제1항제2호	등록취소			
11) 법 제39조에 따른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 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 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의2 제2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	----	-------------	-------------	-------------